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국민신문고 등 법령민원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6조제4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핀테크(Fintech) 등 금융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

6의3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(이하 “상거래기업 및 법인”이라 한다)의 개인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

17의2.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선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
3의3.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3의4. 우수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사업화 및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

8의2. 영상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8의3. 인공지능,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에 관한 사항

8의4. 인공지능, 자율주행 등 신기술 및 융복합 산업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제6조제5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에 제22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

23.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

24.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·개발·보급 및 활용도 평가

25.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구성·운영 지원

26.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 정부 운영사이트의 교육자료 보급·관리
제7조제4항제17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5호, 제6호, 제9호 및 제10호 중 “제4호”를 각각 “제4호, 제4의2호, 제4의3호 및 제4의4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“실시”를 “실시(이동통신 등 통신분야는 제외한다)”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
4의2.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동통신 등 통신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계획 수립 및

실시

4의3.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4의4.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

별표 1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(비서) 1 다음에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연구관 11”을 신설하고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연구관 11 다음에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연구관 50”를 신설하며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1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사무관 25”를 삭제하며, “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”를 삭제하며, 행정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(비서) 2 다음에 “행정주사·공업주사·통계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보건주사·사회복지주사 또는 연구사 48”를 신설하고, 행정주사·공업주사·통계주사·환경주사·시설주사·전산주사·방송통신주사·보건주사·사회복지주사 또는 연구사 48 다음에 “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통계주사보·환경주사보

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14”를 신설하며, 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14 다음에 “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2”를 신설하고, 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 2 다음에 “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(비서) 2”를 신설하며, “행정주사 24”를 삭제하고, “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4”를 삭제한다.

별표 1 “행정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0”을 삭제하고, “행정주사보 7”를 삭제하며, “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4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”를 삭제하며, “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(운전) 2”를 삭제하고, “행정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(비서) 2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기획조정관) ① ~ ③ (생략)	제4조(기획조정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심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.	④ ----- ----- --.
1. ~ 11. (생략)	1. ~ 11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2. <u>국민신문고 등 법령민원 해석 처리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령해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</u>
⑤ · ⑥ (생략)	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개인정보정책국) ① ~ ③ (생략)	제6조(개인정보정책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④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6의2. <u>핀테크(Fintech) 등 금융 혁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</u>
<u><신 설></u>	6의3. 「 <u>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(이하 “상거래기업 및 법인”이라 한다)의 <u>개인신용정</u>

7. ~ 12. (생략) <u>13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</u> <u>14.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</u> <u>15.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·개발·보급 및 활용도 평가</u> <u>16.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구성·운영 지원</u> <u>17.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 등 정부 운영사이트의 교육자료 보급 및 관리</u> <u><신설></u> 18. (생략) ⑤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·2. (생략) <u>3.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, 보급 및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</u> <u><신설></u>	<u>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</u> 7. ~ 12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<삭제></u> <u>17의2. 개인정보보호 포털 개선·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18.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 <u>3의2.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호 혁신기술 연구개발에 관한</u>
--	--

<신 설>

<신 설>

4. ~ 8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9. · 10. (생 략)

11. 핀테크(Fintech) 등 금융혁
신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
개인정보 보호 정책 협의

1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
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제1
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

사항

3의3.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보
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
항

3의4. 우수 개인정보보호 기술
에 대한 사업화 및 보급 지원
에 관한 사항

4. ~ 8. (현행과 같음)

8의2. 영상정보보호 관련 법령
의 제 · 개정에 관한 사항

8의3. 인공지능, 자율주행 등 신
기술 및 융복합 산업 서비스
에 관한 개인정보 규제 검토
에 관한 사항

8의4. 인공지능, 자율주행 등 신
기술 및 융복합 산업 서비스
에 관한 개인정보 제도 개선
사항 발굴 및 관련 법령의 제
· 개정에 관한 사항

9. · 10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<삭 제>

인(이하 “상거래기업 및 법인”이라 한다)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금융위원회 등과의 정책 협의

⑥ (생략)

⑦ 자율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21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제7조(조사조정국) ① ~ ③ (생략)

④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6. (생략)

17. 과태료·과징금 부과·징수

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.

1. ~ 21. (현행과 같음)

22.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

23. 공공 및 민간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지원

24. 개인정보 보호 교육 콘텐츠 기획·개발·보급 및 활용도 평가

25. 개인정보 보호 교육기관 및 전문 강사 구성·운영 지원

26. 개인정보 보호 포털 등 정부 운영사이트의 교육자료 보급·관리

제7조(조사조정국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.

1. ~ 1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총괄 및 관련 시스템 운영에
관한 사항

18. ~ 21. (생략)

⑤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
장한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
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실태
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의 통
계·분석

6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
(이하 이 항에서 “소관사항”이
라 한다)과 관련된 개인정보
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
책 및 제도개선 추진

7.·8. (생략)

18. ~ 21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4의2.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
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동
통신 등 통신분야에 대한 개
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
해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

4의3. 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
보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
행정처분에 관한 사항

4의4. 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
대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

5. ----- 제4호, 제4의2호,
제4의3호 및 제4의4호-----

6. ----- 제4호, 제4의2호,
제4의3호 및 제4의4호-----

7.·8. (현행과 같음)

9. 제1호부터 <u>제4호</u>까지의 규정 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대한 위 원회 심의·의결 안건 작성 및 상정에 관한 사항 10. 제1호부터 <u>제4호</u>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 결과에 관한 시 정조치·개선권고·고발 등 행정조치 11. · 12. (생 략) ⑥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. 1.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통 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개 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및 침 해조사 계획 수립 및 <u>실시</u> 2. (생 략) 3. <u>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 호 실태점검 및 침해조사와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</u> 4. ~ 6. (생 략) 7. <u>개인정보 보호 분야 국내대</u>	9. ----- <u>제4호, 제4의2호,</u> <u>제4의3호 및 제4의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10. ----- <u>제4호, 제4의2호,</u> <u>제4의3호 및 제4의4호</u>----- ----- ----- ----- 11. · 12.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실시(이동 통신 등 통신분야는 제외한 다)</u> 2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4. ~ 6.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-	--

<u>리인 제도의 운영실태 점검</u> 8. ~ 15. (생략) ⑦ · ⑧ (생략)	8. ~ 15. (현행과 같음) ⑦ · ⑧ (현행과 같음)
---	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8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 ·	· ·	· ·	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11</u>	+11
<u>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연구관</u>	<u><신 설></u>	<u>50</u>	+50
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	<u>11</u>	<u><삭 제></u>	-11
<u>행정사무관</u>	<u>25</u>	<u><삭 제></u>	-25
<u>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	<u>15</u>	<u><삭 제></u>	-15

<u>행정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</u>	<u>10</u>	<u><삭 제></u>	-10
.	.	.	
<u>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통계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 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보건주사 · 사회복지주사 또는 연구사</u>	<u><신 설></u>	<u>48</u>	+48
<u>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 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 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 보</u>	<u><신 설></u>	<u>14</u>	+14
<u>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 기 · 방송통신서기 또는 운전서기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통계 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 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 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(비서)</u>	<u><신 설></u>	<u>2</u>	+2
<u>행정주사</u>	<u>24</u>	<u><삭 제></u>	-24
<u>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</u>	<u>14</u>	<u><삭 제></u>	-14

<u>행정주사 ·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</u>	<u>10</u>	<u><삭 제></u>	-10
<u>행정주사보</u>	<u>7</u>	<u><삭 제></u>	-7
<u>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</u>	<u>4</u>	<u><삭 제></u>	-4
<u>행정주사보 ·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</u>	<u>3</u>	<u><삭 제></u>	-3
<u>운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상당(운전)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<u>행정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 통신서기보 또는 별정직 9급상당(비서)</u>	<u>2</u>	<u><삭 제></u>	-2
.	.	.	
.	.	.	